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 231	제출년월일 : 1994. 4.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속초시종합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종합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기위한 관리사무소를 속초시조례로 구성 운영 (안 제1조)

나.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안 제4조)

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장 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안 제6조)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33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종합경기장의 관리 및 운영
2. 종합경기장의 사용허가 처리
3.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수입
4. 기타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①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관리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장 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